
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15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7일  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5일, 이호대 의원외 13명
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
(2020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호대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」의 모호한 문구를 바로잡고, 조례상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이호대 의원 등 14명의 의원  
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5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 
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중 모호  
한 문구를 바로잡고 조례상 용어를 일관성 있게 「알기 쉬운 법령 정  
비기준」에 따라 수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이 이해  
하기 어렵고,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  
다고 지적하면서,  
  
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,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  
러운 말투, 어색한 번역 투 표현으로 가득한 법령문을 해소하기 위해  
그동안 ‘법령용어 순화사업’과 ‘법률 한글화 사업’ 및 ‘알기 쉬운 법령  
만들기 사업’을 진행해 왔습니다.<sup>1)</sup>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 
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  
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,  
  
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 
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  
니다.

1)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9판)」, 2019.12.

## 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로, “학부모”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하고,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시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

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교육청”으로,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안 제2조제1항의 “학부모”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, “학부모란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학부모는 의미가 중복”되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○ 이와 관련하여 “학부모”의 사전적 의미는 “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”으로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표현할 경우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나, 조례상 의미는 조문 전체의 방향성과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달리 쓰여질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의 학부모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예를 들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학부모회 조례”) 제2조제2호에 따르면 “학부모”란 “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어,<sup>2)</sup>

---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학부모회 조례의 경우 학부모를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뿐만 아니라 미취학 학생의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학부모를 정의하고 있으며, 이는 동 조례의 방향성과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- 이와 같은 취지에 따른다면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료법률 상담대상자가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명확히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는바,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수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**

**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**

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**

**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---

2. "학부모"란 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학부모”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시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교육청”으로,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담대상자 등) ① 상담대상자는 <u>서울특별시교육감</u>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<u>학부모</u>로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상담대상자 등) ① -----  <del>---</del><u>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<del>-----</del>  <del>-----</del> <u>학생의 학부모</u><del>-----</del>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상담방법)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<u>서울시교육청</u>에서 지정한 온라인 상으로 성명·연락처·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상담방법) ① -----  <del>-----</del>  <u>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</u><del>-----</del>  <del>-----</del>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상담변호사 지정) 상담변호사는 <u>서울특별시교육청</u> 법률고문 중에서 <u>서울특별시교육감</u>이 지정한다.</p>	<p>제5조(상담변호사 지정) -----  <del>---</del><u>교육청</u><del>-----</del>  <del>-----</del> <u>교육감</u><del>-----</del>  <del>---</del>.</p>